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8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 윤준병 • 정동영 • 허 영

안호영 · 이병진 · 홍기원

조계원 · 민형배 · 이춘석

허종식 · 민홍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 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휴대전화 가 상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 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닌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조사시간·가중값 조정 등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 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유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4. 제6항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⑥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과장된 광고
- 2.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 3.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하여 얻을 수 있는 특정 정보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부당한 광고 제108조제6항 중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 5. 제8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자

제261조제3항제5호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를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4항을 위반하여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무사용의 적용례) 제 10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
	<u> </u>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⑤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u>제3호</u> 에 해당하여 등	<u>제3호 또는 제4호</u>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6항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
	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u> <신 설></u>	⑥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1. 거짓·과장된 광고</u>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생 략)

⑥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 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 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 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 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

<u>방하는 광고</u>
3.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
하여 얻을 수 있는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부당
 한 광고
_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유형, 그 밖에 필요한 사
하
고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9 다른 서기어로즈시키라으 비

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 ③ (생 략) <신 설>

⑭ (생 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저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
하지 아니하는 때(제3항에 따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하지 아
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사설계서 • 표
본추출·결과분석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u>⑤</u> (현행 제14항과 같음)
세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요청하
여야 한다.
<u> </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 사를 실시한 자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현행과 같음)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1. ~ 4. (생략) <신 설>
- ④ · ⑤ (생 략)

-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4의2. (생략)
-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 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 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 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 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④ ~ ⑫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4항을 위반 하여 공표 · 보도하지 아니하 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

고하지 아니한 자

④ ~ ① (현행과 같음)

- 11 -